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847
----------	-----

제출년월일 : 2004. 4. 27.

제 출 자 : 정호용위원외 6명

1. 수정이유

-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중 내용이 미흡하거나 구성 체계상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 보완코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 제2장 기금의 지원 및 용자, 제3장 기금의 반환 및 상환 등 실제적 규정 통합하여 신설
- 당초 조문 구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폭축소(당초 51조→44조)

3. 본문 : 붙임과 같음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1조, 의료급여법 제25조”로 한다.

안 제2조 제1호를 제2호로, 제2호를 제3호로,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4호중 “여성복지사업”을 여성·아동복지사업”으로, “여성발전기본법 제30조”를 “여성발전기본법 제30조와 아동복지법 제10조”로 하여 제5호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통합기금”이라 함은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규정한 기금을 말한다.

안 제2조제5호를 제6호로, 제6호를 제7호로, 제7호를 제8호로 한다.

안 제3조제1항중 제5호를 제6호로,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의료급여법 제21조, 제23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받은 대불금, 부당이득금 및 과징금

안 제5조제1항중 “단, 기초생활보장사업기금중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의료급여사업기금은 특별회계를 운영한다.”를 “단,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자활사업 및 자활공동체사업자금 융자계정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계정으로 구분하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계정 및 의료급여 사업계정은 특별회계로 운용한다.”로 한다.

안 제5조제3항중 “단, 기초생활보장사업기금중 저소득주민생활안정융자금, 의료급여사업기금”을 “단, 기초생활보장사업계정중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계정, 의료급여사업계정”으로 한다.

안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동조제1항중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
3.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4. 기타 기금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안 제7조제1항중 “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설치한다.”를 “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한다.”로 동조제2항중 “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을 “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으로 하고, 제7조를 제8조로 한다.

안 제2장의 제목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기금의 지원 및 용자”로 한다.

안 제21조를 제10조로 하고 동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①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개인, 기관, 단체)는 기금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매회계년도 개시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한 계획도 포함하여야 한다.

안 제27조를 제11조로 하고 동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①자활공동체가 사업자금으로 기금을 용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활후견기관의 추천서를 첨부한 용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저소득생활안정자금의 용자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 또는 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세대원은 용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용자신청서에는 2인이상이 연대보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적담보외에 물적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안 제34조를 삭제한다.

안 제28조제1항을 제12조제1항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군수는 융자신청서를 검토하여 융자금 대출이 결정되면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 등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한다.

안 제28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을 삭제한다.

안 제39조를 삭제하고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자활공동체에 대한 기금융자는 자활공동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자활후견기관이 자활공동사업의 전망과 착수시기 및 자금의 투자시기 등을 분석한 추천서에 의거 자활공동체당 융자한도금액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융자할 수 있다.

안 제26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삭제하고 제26조제1항을 제13조제1항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융자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 범위내에서 자활공동체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안 제33조제1항을 제13조제2항으로 제33조제2항을 제13조제3항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저소득생활안정자금의 가구당 융자액 한도액은 2천만원 이하로 한다.

③융자금의 이율은 연3%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12%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안 제29조를 제14조로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중복융자의 금지)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융자금의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중복하여 융자할 수 없다. 단, 기금을 융자받은 자활공동체가 운영중인 사업의 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으나 기 융자금을 포함한 총 융자액이 자활공동체당 융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안 제41조를 삭제한다.

안 제18조를 제15조로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사업계획변경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개인, 기관, 단체)가 추천하는 사업계획 및 지원받은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 제22조 및 제30조를 삭제한다.

안 제40조제1항중 “가구”를 “사업자(개인, 기관, 단체)”로 하여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안 제3장의 제목 “장애인복지기금”을 “기금의 반환 및 상환”으로 한다.

안 제19조를 제17조로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지원금의 회수·반환) 기금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없이 사업자금의 사용용도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중단 및 사업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안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용자금의 회수·반환) ①군수는 사업자금을 용자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용자금의 상환기간 전이라도 그 용자 받은 자금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될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없이 자금을 용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때

②군수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용자금을 지원받은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용자금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1. 사업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없이 자금을 용자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4. 용자받은 자가 군관할 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안 제42조를 삭제한다.

안 제43조를 제19조로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용자금의 반환통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상환기일전에 용자금을 회수하여야 할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용자금의 회수를 수탁금융기관 및 반환 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통지를 받은 반환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안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용자금의 상환기간) ①사업자금을 용자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 5년 균분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잔액을 일시 상환할 수 있다.

②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을 용자받은 가구는 2년거치 3년균분 상환한다.

안 제36조를 삭제한다.

안 제4장의 제목 “여성복지기금”을 “저소득주민자녀장학사업”으로 한다.

안 제9조제1항중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제7호 및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여 제22조로 하고,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안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안 제5장의 제목 “노인복지기금”을 “장애인복지사업”으로 한다.

안 제14조중 “제4조제2호”를 “제2조제6호 및 제4조제2호”로 한다.

안 제6장의 제목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여성·아동복지사업”으로 한다.

안 제15조중 “제4조제3호의 여성복지사업범위”를 “제2조제5호 및 제4조제3호의 여성·아동복지사업범위”로하여 제28조로 하고, 동조제1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성권의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4. 여성의 국제협력 사업의 지원

안 제15조를 제28조로 하고 제15조중 제6호를 제7호로, 제7호를 제8호로, 제8호를 제9호로, 제9호를 제10호로,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

안 제16조를 삭제한다.

안 제7장의 제목 “의료급여기금”을 “노인복지사업”으로 한다.

안 제20조중 “제4조제4호”를 “제2조제4호 및 제4조제4호”로 한다.

안 제8장의 제목 “보칙”을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한다.

안 제24조중 “제4조제5호”를 “제2조제3호 및 제4조제5호”로 하고, 제30조로 한다.

안 제24조제4호를 제30조제4호로 하고 제24조제5호를 삭제한다.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채무나. 수급자가 대여받은 생업자금 채무

안 제9장을 신설하여 그 제목을 의료급여 사업으로 한다.

안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급여비용의 대불) 의료급여법 제10조 규정에 의해 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급여사업계정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나머지 급여비용(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제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사업계정에서 대불할 수 있다.

제35조(급여비용의 대불신청) ①급여비용의 대불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2종 수급자로서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급여비용 대부신청서를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 기관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6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 사업계정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안 제47조중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생활보장위원회)”를 “의료급여분과위원회”로 한다.

안 제10장을 신설하여 그 제목을 보칙으로 한다.

안 부칙 제2조,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폐지하고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이 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고성군노인복지기금, 고성군여성정책발전기금, 고성군의료보호기금에 속하는 자산, 채권, 채무 및 기타의 권리·의무는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재 정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사회복지 증진과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소득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 <u>의료급여법</u> 등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생략)</p> <p><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여성복지사업”이라 함은 <u>여성발전기본법 제30조</u>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5. (생략) 6. (생략) 7. (생략) <p>제3조(기금의 재원) ①(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4. (생략) <p><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생략) 6. (생략) <p>②(생략)</p>	<p>제1조(목적) ----- ----- ----- ----- ----- <u>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1조</u>, <u>의료급여법 제25조</u> ----- ----- ----- -----.</p> <p>제2조(정의) (제정안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합기금”이라 함은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규정한 기금을 말한다. 2. (제정안 제1호와 같음) 3. (제정안 제2호와 같음) 4. (제정안 제3호와 같음) 5. “여성·아동복지사업”----- <u>여성발전기본법 제30조</u>와 <u>아동복지법 제10조</u> -----. 6. (제정안 제5호와 같음) 7. (제정안 제6호와 같음) 8. (제정안 제7호와 같음) <p>제3조(기금의 재원) ①(제정안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4. (제정안과 같음) 5. <u>의료급여법 제21조</u>, <u>제23조</u> 및 <u>제29조</u>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받은 대불금, 부당이득금 및 과징금 6. (제정안 제5호와 같음) 7. (제정안 제6호와 같음) <p>②(제정안과 같음)</p>

제 정 안	수 정 안
<p>제4조(기금의 용도) (생략)</p> <p>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4조 각호의 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되 수입·지출의 예산으로 처리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사업 기금중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유자금, 의료급여사업기금은 특별회계를 운영한다.</p> <p>②(생략)</p> <p>③기금은 당해년도 가용기금과 운용이자 수입 범위안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단, 기초생활보장사업기금중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유자금, 의료급여사업기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생략)</p> <p><신설></p>	<p>제4조(기금의 용도) (제정안과 같음)</p> <p>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 ----- ----- 단,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자활사업 및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유자금계정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유자금계정으로 구분하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유자금계정 및 의료급여사업계정은 특별회계로 운용한다.</p> <p>②(제정안과 같음)</p> <p>③----- ----- ----- 단, 기초생활보장사업 계정중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유자금계정, 의료급여사업계정-----</p> <p>④(제정안과 같음)</p> <p>제6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동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 3.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4. 기타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p>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군수는 제4조의 각 기금의 용도별로 매회계 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p> <p>②(생략)</p>	<p>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 ----- 위원회 ----- -----</p> <p>②(제정안과 같음)</p>

재 정 안	수 정 안
<p>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군수는 이 조례 운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u>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u>를 설치한다.</p> <p>②<u>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용에 관한 사항</u>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p>	<p>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 <u>사회복지위원회</u>를 설치·운영한다.</p> <p>②<u>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u> ----- -----.</p>
<p>제8조(회계공무원) (생략)</p>	<p>제9조(회계공무원) (제정안 제8조와 같음)</p>
<p>제2장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p>	<p>제2장 기금의 지원 및 육자</p>
<p>제21조(지원신청)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단체는 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매회계년도 개시후 2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p>	<p>제10조(지원신청) ①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개인, 기관, 단체)는 기금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매회계년도 개시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비지원대상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한 계획도 포함하여야 한다.</p>
<p>제27조(육자신청) ①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가 사업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육자·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육자신청서와 자활후견기관 추천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②육자신청서에는 2명이상의 연대 보증을 하여야 한다.</p>	<p>제11조(육자신청) ①자활공동체가 사업자금으로 기금을 육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활후견 기관의 추천서를 첨부한 육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삭제></p>
<p>③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육자신청자로 하여금 제2항의 연대보증인의 물적담보를 제공하게할 수 있다.</p>	<p><삭제></p>
<p>제34조(육자신청) ①육자금의 대부분을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 또는 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세대원은 대부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②저소득생활안정자금의 육자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 또는 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세대원은 육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육자금을 대부분기 위하여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p>	<p>③육자신청서에는 2인이상이 연대보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적담보외에 물적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p>

제 정 안	수 정 안
<p>제28조(용자금의 대출) ①군수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용자신청서를 검토하여 용자금 대출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용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p> <p>②자활공동체에 대한 용자금의 대출은 자활공동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자활후견기관이 자활공동사업의 전망과 착수시기 및 자금의 투자시기 등을 분석한 추천서에 의거 제26조제1항에 규정한 용자금액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대출할 수 있다.</p>	<p>제12조(용자금의 대출) ①군수는 용자신청서를 검토하여 용자금 대출이 결정되면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용자대상자 및 용자금액 등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한다.</p>
<p>제35조(대상자의 선정통보) ①군수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 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대출토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용자 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p><삭제></p> <p><삭제></p>
<p>②(생략)</p> <p>제39조(대출 및 상환금회수) ①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p> <p>②군수는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p>	<p><삭제></p> <p>②(제정안 제35조제2항과 같음)</p> <p><삭제></p>
<p><신설></p>	<p><삭제></p> <p>③자활공동체에 대한 기금융자는 자활공동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자활후견기관이 자활공동사업의 전망과 착수시기 및 자금의 투자시기 등을 분석한 추천서에 의거 자활공동체당 용자한도금액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용자할 수 있다.</p>

제 정 안	수 정 안
<p>제26조(사업자금의 용자) ①제2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용자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금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p> <p>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p> <p>③용자금의 이자는 연 3%로 하되 상환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12%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p> <p>④군수는 사업자금을 용자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때 3.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때 	<p>제13조(용자한도 및 이율) ①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용자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 범위내에서 자활공동체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제33조(용자한도 및 이율 등) ①가구당 용자 한도액은 2천만원 이하로 하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p> <p>②용자금의 대부이율은 연3%로 한다.</p>	<p>②저소득생활안정자금의 가구당 용자액 한도액은 2천만원 이하로 한다.</p> <p>③용자금의 이율은 연3%로 하되 상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12%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p>

제 정 안	수 정 안
<p>제29조(중복용자의 금지) <u>용자금을 대부분은 자활공동체에 대하여는 용자금 상환 이전에는 중복용자할 수 없다. 다만, 지원받아 운영중인 사업의 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용자할 수 있으며, 기 용자금을 포함하여 제26조제1항의 용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u></p>	<p>제14조(중복용자의 금지) <u>기금을 용자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용자금의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중복하여 용자할 수 없다. 단, 기금을 용자받은 자활공동체가 운영중인 사업의 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용자할 수 있으나 기 용자금을 포함한 총용자액이 자활공동체당 용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u></p>
<p>제41조(중복용자의금지) <u>용자금을 대부분은 가구에 대하여는 용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용자할 수 없다.</u></p>	<p><삭제></p>
<p>제18조(사업계획변경승인) <u>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단체·법인)가 추진하는 사업과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u></p>	<p>제15조(사업계획변경승인) <u>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개인, 기관, 단체)가 추천하는 사업계획 및 지원받은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u></p>
<p>제22조(사업계획변경승인) <u>제21조의 신청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단체·법인)가 추진하는 사업과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p>	<p><삭제></p>
<p>제30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u>기금을 지원받은 개인·단체 등이 제27조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u></p>	<p><삭제></p>

제 정 안	수 정 안
<p>제40조(지도·감독) ①군수는 자금을 용자 받은 <u>가구</u>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 시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 관리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 할 수 있다.</p>	<p>제16조(지도·감독) ①----- ----- <u>사업자(개인, 기관, 단체)</u> ----- ----- ----- -----.</p>
<p>②(생략)</p>	<p>②(제정안과 같음)</p>
<p>제3장 장애인복지기금</p>	<p>제3장 기금의 반환 및 상환</p>
<p>제19조(지원금의 회수·반환) 제16조의 <u>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없이 사용 용도를 위반하여 부당한 사용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중단 및 사업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 사용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u></p>	<p>제17조(지원금의 회수·반환) <u>기금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없이 사업자금의 사용용도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중단 및 사업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u></p>
<p>제23조(지원금의 회수·반환) 제21조의 <u>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사업자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없이 사용 용도를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용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중단 및 사업의 취소를 명할수 있다. 이 경우 부당 사용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u></p>	<p><삭제></p>
<p><신설></p>	<p>제18조(용자금의 회수·반환) ①군수는 <u>사업자금을 용자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용자금의 상환 기간 전이라도 그 용자 받은 자금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때 3.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없이 자금을 용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때

제 정 안	수 정 안
<p>제42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신설></p>	<p><삭제></p> <p>②군수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을 융자금을 지원받은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없이 자금을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받은 자가 군관할 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p>제43조(융자금 반환통보) 제42조 각호에 의하여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19조(융자금의 반환통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상환기일전에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할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융자금의 회수를 수탁금융기관 및 반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통지를 받은 반환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p>
<p>제36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후 년1회 균분상환한다.</p>	<p>제20조(융자금의 상환기간) ①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 5년균분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잔액을 일시 상환할 수 있다.</p> <p>②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가구는 2년거치 3년균분 상환한다.</p> <p><삭제></p>

제 정 안	수 정 안
<p>제37조(융자금의 상환기간연장)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제4장 여성복지기금</u></p> <p>제9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u>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u> <u><신설></u></p> <p>1.-2. (생략)</p> <p>②<u>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 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한다.</u></p> <p>제10조(장학금의 종류) (생략)</p> <p>제11조(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 (생략)</p> <p>제12조(장학생의 선발) (생략)</p> <p>제13조(지급정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제5장 노인복지기금</u></p> <p>제14조(사업의 범위) <u>제4조제2호의 장애인 복지사업 범위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u> 1.-6.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제6장 기초생활보장기금</u></p> <p>제15조(사업의 범위) <u>제4조제3호의 여성 복지사업 범위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u></p> <p>1. <u>여성정책의 개발·연구사업 지원</u> 2. <u>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권의 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u> 3. <u>여성단체의 육성·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u> 4. <u>여성단체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u> 5. (생략)</p> <p><u><신설></u></p>	<p>제21조(상환기간의 연장) (제정안 제37조와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제4장 저소득주민자녀장학사업</u></p> <p>제2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u>제2조제7호 및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u> -----.</p> <p><u>다만,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자는 제외한다.</u></p> <p>1.-2. (제정안과 같음)</p> <p><u><삭제></u></p> <p>제23조(장학금의 종류) (제정안 제10조와같음)</p> <p>제24조(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 (제정안 제11조와 같음)</p> <p>제25조(장학생의 선발) (제정안 제12조와같음)</p> <p>제26조(지급정지) (제정안 제13조와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제5장 장애인복지사업</u></p> <p>제27조(사업의 범위) <u>제2조제6호 및 제4조 제2호 -----.</u></p> <p>1.-6.(제정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제6장 여성·아동복지사업</u></p> <p>제28조(사업의 범위) <u>제2조제5호 및 제4조 제3호의 여성·아동복지사업범위는 다음 각호의 1로한다.</u></p> <p>1. <u>여성권의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u> 2. <u>여성단체 사업의 지원</u> 3. <u>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u> 4. <u>여성의 국제협력 사업의 지원</u> 5. (제정안과 같음) 6. <u>양성평등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u></p>

제 정 안	수 정 안
<p>6. (생략) 7. (생략) 8. (생략) 9. (생략) 10. (생략)</p> <p><u>제16조(여성단체의 지원) ①여성단체가 추진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u></p> <p><u>②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양성 평등과 여성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p> <p><u>제17조(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 ①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을 위한 여성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p><u>②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 직업 능력개발훈련 등 여성과 관련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동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7장 의료급여기금</u></p> <p><u>제20조(사업의 범위) 제4조제4호의 노인 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u> 1.-7.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제8장 보 칙</u></p> <p><u>제1절(생략)</u></p> <p><u>제24조(사업의 범위) 제4조제5호의 기초생활보장사업 범위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u> 1.-3.(생략)</p>	<p>7. (제정안 제6호와 같음) 8. (제정안 제7호와 같음) 9. (제정안 제8호와 같음) 10. (제정안 제9호와 같음) 11. (제정안 제10호와 같음)</p> <p><u><삭제></u></p> <p><u><삭제></u></p> <p><u><삭제></u></p> <p><u><삭제></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7장 노인복지사업</u></p> <p><u>제29조(사업의 범위) 제2조제4호 및 제4조제4호 -----.</u> 1.-7. (제정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제8장 기초생활보장사업</u></p> <p><u>제1절(제정안과 같음)</u></p> <p><u>제30조(사업의 범위) 제2조제3호 및 제4조제5호의 -----</u> -----. 1.-3.(제정안과 같음)</p>

계 정 안	수 정 안
<p>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 하는 자활 후진기관이 채무를 신용 보 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p>	<p>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p>
<p>5. 재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 부터 대여받은 채무</p>	<p>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 으로부터 대여 받은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은 생업자금 채무 <삭제></p>
<p>6. (생략)</p>	<p>5. (제정안 제6호와 같음)</p>
<p>7. (생략)</p>	<p>6. (제정안 제7호와 같음)</p>
<p>제25조(지원대상) (생략)</p>	<p>제31조(지원대상) (제정안 제25조와 같음)</p>
<p>제31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 이차보전) (생략)</p>	<p>제32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기금 이차보전) (제정안 제31조와 같음)</p>
<p>제2절 (생략)</p>	<p>제2절 (제정안과 같음)</p>
<p>제32조(용자대상) (생략)</p>	<p>제33조(용자대상) (제정안 제32조와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제9장 의료급여사업</p>
<p><신설></p>	<p>제34조(급여비용의 대불) 의료급여법 제10</p>
	<p>조 규정에 의해 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 급여사업계정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나 머지 급여비용(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 액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제4조 제6 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사업계정에서 대불할 수 있다.</p>
<p><신설></p>	<p>제35조(급여비용의 대불신청) ①급여비용</p>
	<p>의 대불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2종 수급자로서 수 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급여비용 대부신청서를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 기관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p>

제 정 안	수 정 안
<p><신설></p> <p>제44조(수입) (생략)</p> <p>제45조(지출) (생략)</p> <p>제46조(대불금의 상환) (생략)</p> <p>제47조(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u>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u></p> <p>1.-3.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48조(신용보증) (생략)</p> <p>제49조(결산 및 보고) (생략)</p> <p>제50조(관계규정의 준용) (생략)</p> <p>제51조(시행규칙)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생략)</p> <p>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생략)</p> <p>제3조(경과조치) ①<u>고성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고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계정으로 이입조치 한다.</u></p> <p>②<u>고성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보고 융자금 상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u></p> <p><신설></p> <p>③(생략)</p>	<p>제36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u>의료급여 사업계정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u></p> <p>제37조(수입) (제정안 제44조와 같음)</p> <p>제38조(지출) (제정안 제45조와 같음)</p> <p>제39조(대불금의 상환) (제정안 제46조와 같음)</p> <p>제40조(결손처분) ----- ----- <u>의료급여분과위원회</u> ----- ----- ----- -----.</p> <p>1.-3. (제정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제10장 보칙</p> <p>제41조(신용보증) (제정안 제48조와 같음)</p> <p>제42조(결산 및 보고) (제정안 제49조와 같음)</p> <p>제43조(관계규정의 준용) (제정안 제50조 와 같음)</p> <p>제44조(시행규칙) (제정안 제51조와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제정안과 같음)</p> <p>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제정안과 같음)</p> <p>제3조(경과조치) <삭제></p> <p><삭제></p> <p>①이 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u>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고성군노인복지기금, 고성군여성정책발전기금, 고성군의료보호기금에 속하는 자산, 채권, 채무 및 기타의 권리·의무는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이 이를 승계한다.</u></p> <p>②(제정안 제3항과 같음)</p>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사회복지증진과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소득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41조, 의료급여법25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기금”이라 함은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규정한 기금을 말한다.
2. “기초생활보장”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생활이 어려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자활공동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4. “노인”이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9조에 규정한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5. “여성·아동복지사업”이라 함은 여성발전기본법 제30조와 아동복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6.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7. “장학금”이라 함은 저소득층 또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군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8. “수급권자”라 함은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도비 보조금
2. 군 출연금 및 적립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5. 의료급여법 제21조, 제23조,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받은 대불금, 부당이득금 및 과징금
 6. 적립기금운용에 따른 이자 및 기타수입
 7.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수익금
- ②군수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및 적립금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금조성계획에 따라 매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이 조례에서 정하는 복지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저소득주민자녀장학사업
2. 장애인복지사업
3. 여성·아동복지사업
4. 노인복지사업
5. 기초생활보장사업
6. 의료급여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4조 각호의 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되 세입 세출의 예산으로 처리한다. 단,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사업 및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용자계정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용자계정으로 구분하고,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용자계정 및 의료급여 사업계정은 특별회계로 운용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최고 이율로 예치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기타 안정적인 기금증식 사업

③기금은 당해년도 가용기금과 운용이자수입 범위안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 단, 기초생활보장사업 계정중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용자계정, 의료급여사업계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군수는 기금 및 이자 수입금의 관리에 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 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

3.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4. 기타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군수는 제4조의 각 기금의 용도별로 매회계 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 한다.

1. 기금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군수는 이 조례 운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계정별 담당6급 공무원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기금의 지원 및 용자

제10조(지원신청) ①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개인, 기관, 단체)는 기금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매회계연도 개시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한 계획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용자신청) ①자활공동체가 사업자금으로 기금을 용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활후견 기관의 추천서를 첨부한 용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저소득생활안정자금의 용자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 또는 가구를 대표

할수 있는 세대원은 용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용자신청서에는 2인이상이 연대보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적담보외에 물적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용자금의 대출) ①군수는 용자신청서를 검토하여 용자금 대출이 결정되면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용자대상자 및 용자금액 등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한다.

②용자결정 사실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수탁금융기관의 자체내규에 따라 용자신청 절차를 행하여야 한다.

③자활공동체에 대한 기금용자는 자활공동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자활후견 기관이 자활공동사업의 전망과 착수시기 및 자금의 투자시기 등을 분석한 추천서에 의거 자활공동체당 용자한도금액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용자할 수 있다.

제13조(용자한도 및 이율) ①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용자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 범위내에서 자활공동체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저소득생활안정자금의 가구당 용자액한도액은 2천만원 이하로 한다.

③용자금의 이율은 연3%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12%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14조(중복금의 종류) 기금을 용자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용자금의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중복하여 용자할 수 없다. 단, 기금을 용자받은 자활공동체가 운영중인 사업의 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용자할 수 있으나 기 용자금을 포함한 총 용자액이 자활공동체당 용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사업계획변경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개인, 기관, 단체)가 추천하는 사업계획 및 지원받은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①군수는 자금을 용자받은 사업자(개인, 기관, 단체)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관리 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다.

②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년1회(매년 12. 31) 고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기금의 반환 및 상환

제17조(지원금의 회수·반환) 기금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없이 사업자금의 사용용도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중단 및 사업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제18조(융자금의 회수·반환) ①군수는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융자금의 상환기간 전이라도 그 융자 받은 자금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없이 자금을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다

②군수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금을 지원받은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1. 사업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없이 자금을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받은 자가 군관할 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제19조(융자금의 반환통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상환 기일전에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할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융자금의 회수를 수탁금융기관 및 반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통지를 받은 반환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융자금의 상환기간) ①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 5년 균분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잔액을 일시 상환할 수 있다.

②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가구는 2년거치 3년균분 상환한다.

제21조(상환기간의 연장) ①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 의무자와 수탁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

제2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제2조제7호 및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영세농어민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재학생
2. 천재지변이나 각종 재해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자녀로 읍·면장이 인정하는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재학생

제23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은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24조(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25조(장학생의 선발)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읍·면장은 제22조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군수에게 추천한다.
2. 군수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읍·면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제26조(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2. 퇴학, 정학,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때
4. 경제력의 향상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절될 때

제5장 장애인복지사업

제27조(사업의 범위) 조례제2조6호 및 제4조제2호의 장애인복지사업 범위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1. 재가장애인의 재활지원사업
2. 장애인복지시설 거주자의 보호사업
3. 장애인 관련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사업
4.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활동사업
5. 장애발생 예방과 재활을 위한 사업
6. 기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장 여성·아동복지사업

제28조(사업의 범위) 제2조제5호 및 제4조제3호의 여성·아동복지사업 범위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1.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4.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5. 우수 여성지도자 양성 및 여성지도자 국내외 연수
6.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
7. 영유아의 보육 및 보육시설 설치 운영
8.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발생예방 및 홍보사업
9. 아동관련 행사 및 자료와 정보의 수집
10. 불우아동의 결연·후원사업
11.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장 노인복지기금

제29조(사업의 범위) 제2조호 및 제4조제4호의 노인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1. 충효예절등 전통문화 선양사업
2. 고성군 노인회보 발간
3.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4.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5.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6. 노인회 운영지원
7.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8장 기초생활보장사업

제1절 자활사업 및 자활공동체사업자금 용자

제30조(사업의 범위) 제2조3호 및 제4조제5호의 기초생활보장사업 범위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 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은 생업자금 채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6. 기타 자활사업 및 자활공동체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31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 받을수 있는 대상은 군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2.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 실시기관
3.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4. 법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32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기금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 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하여 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증지할 수 있다.

제2절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용자

제33조(용자대상) ①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용자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2.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중 일부
3.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4. 고소득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할수 있는 가구
5. 저소득자 및 자녀 대학생 학자금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제5호에 의한 학자금을 용자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중 대학 재학생으로 학교성적이 80점이상(평균“B”학점 이상)인 자로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자 라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용자대상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9장 의료급여기금

제34조(급여비용의 대불) 의료급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급여사업계정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나머지 급여비용(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제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서 대불할 수 있다.

제35조(급여비용의 대불신청) ①급여비용의 대불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2종 수급자로서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급여비용대부신청서를 의료 급여를 행한 의료급여 기관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사업계정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7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통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과목,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8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39조(대불금의 상환) ①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의 경우에는 12회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40조(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의료급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매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10장 보 칙

제41조(신용보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42조(결산 및 보고) ①군수는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일반회계 및 고성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4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 고성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동조례, 고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동조례는 이를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고성군노인복지기금, 고성군여성정책발전기금, 고성군의료보호기금에 속하는 자산, 채권, 채무 및 기타의 권리·의무는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②이 조례 시행 이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며, 이 조례 시행후 폐지된 종전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